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, 국제사업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·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1,700만 미합중국달러, 아프가니스탄 재건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,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2억 3,100만원, 국제금융공사에 7,139만 미합중국달러, 등을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사항 외에는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29. ~ 10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2항에 제84호 부터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4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·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
· 제44호·제49호·제54호·제59호·제65호 및 제75호 외의 출연:

1,700만 미합중국달러

85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·
제67호·제77호 외의 출연: 300만 미합중국달러

86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제69호 및 79호 외의 출
연: 332만 미합중국달러

제1조의2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17.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
의 출자 및 출연: 1,433억7,846만원

19.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·제13호 및
제17호 외의 출자 및 출연: 414억2,490만원

제1조의2제4항에 제11호 및 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국제금융공사에의 일반증자: 7,139만 미합중국달러

12. 국제금융공사에의 제6호 외의 특별증자 : 3,704만 미합중국달러

제1조의2제5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.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·

제13호 · 제15호 · 제17호,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5호 · 제26호 ·

27호 외의 출연: 92억 3,100만원

제1조의2제6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1.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 :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(국제통화기

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출자금 또는 출연금) ①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	①----- ----- -----.
1. ~ 32. (생 략)	1. ~ 32.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 1. ~ 8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----- ----- -----. 1. ~ 83. (현행과 같음) 84. <u>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 · 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 · 제44호 · 제49호 · 제54호 · 제59호 · 제65호 및 제75호 외의 출연: 1,700만 미합중국달러</u> 85. <u>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· 제67호 · 제77호 외의 출연: 300만 미합중국달러</u> 86. <u>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제69호 및 79호 외의 출연: 332만 미합중</u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
	<u>국달러</u>
③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 1. ~ 16. (생략) 17. <u>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및 출연: 1천397억8천878만원</u> 18. (생략) <u><신설></u>	③-----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<u>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및 출연: 1,433억7,846만원</u> 18. (현행과 같음) 19. <u>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·제13호 및 제17호 외의 출자 및 출연: 414억2,490만원</u>
④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 1. ~ 10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④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국제금융공사에의 일반증자: 7,139만 미합중국달러</u> 12. <u>국제금융공사에의 제6호 외의 특별증자: 3,704만 미합중국달러</u>
⑤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	⑤----- ----- -----.

1. ~ 27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27. (현행과 같음)
⑥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 1. <u>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: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(국제통과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2. ~ 18. (생략) ⑦·⑧·⑨·⑩·⑪·⑫·⑬·⑭·⑮·⑯ (생략)	28. <u>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·제13호·제15호·제17호,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5호·제26호·27호 외의 출연: 92억 3,100만원</u> ⑥----- ----- -----. 1. <u>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: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(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2. ~ 18. (현행과 같음) ⑦·⑧·⑨·⑩·⑪·⑫·⑬·⑭·⑮·⑯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제처 경제법제국	
연 락 처	(044) 200 - 6633